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4. 3.19(수)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4. 4. 15(화)

다. 상정일자 : 2014. 4. 15(화) 제20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안전건설과장)

- 본 조례로 규정하고있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의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홍금숙)

-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도로법』에 의한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조례의 개정은 도로법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에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문

내용, 상위법령과의 연계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평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군도·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물의 종류) 「도로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로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관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1조제3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 제41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④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제8조(점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

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